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4가합40411(본소), 2017가합3755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현금청산금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B

피고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16. 망 R의 소송수계인

가. S

나. T

다. 망 U의 소송수계인

1) V

2) W

3) X

4) Y

5) Z

변론 종결 2018. 1. 25.

판결 선고 2018. 2. 8.

주 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약칭한다],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 망 R의 소송수계인 S, T, 피고 망 R의 소송수계인 망 U의 소송수계인 V, W, X, Y, Z [이하 이 사건 본소의 상대방 중 피고(선정당사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약칭한다]은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 마포구 AA 대 185m² 중 별지 3 지분내역의 '상속지분(분자/분모)'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반소 :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등에게 합계 444,30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30. 서울 마포구 AB 일대 31,365.30m²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들은 망 A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후손 또는 그 배우자이다. 망인의 가족관계는 별지 2 망 AC의 가족관계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은 1932. 9. 12.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마포구 AA 대 1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은 이름을 'AD'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구등기부(1979. 10. 4. 신등기부 이기로 폐쇄되었고, 신등기부 역시 1999. 4. 17. 다시 전산 이기로 폐쇄되었다)상 소유자의 이름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 후 망인은 1946년경 다시 원래의 이름을 복구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은 'AD'인 채로 남겨두었고, 구등기부가 신등기부로 이기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이름이 'AE'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의 신등기부상 소유자는 'AE'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전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으로 축조된 건물(총 563세대 규모의 'AF' 아파트)과 조성된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 참조). 원고는 2015. 6. 10.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조성된 대지인 서울 마포구 AG 대 24,361m² 중 6,859.24/24,3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위 대지의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분양을 받을 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건물 중 각 세대의 소유권 및 그에 관한 소유권대지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참조].

[인정 근거]

- 피고(선정당사자)과 피고 Q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Q: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본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3 지분내역의 '상속지분(분자/분모)'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5.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10. 서울 마포구 AG 대 24,361㎡ 중 6,859.24/24,36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지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그 목적이 실현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본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666,462,500원 중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상속지분 68,708,640/103,062,960에 상응하는 444,308,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참조). 따라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직접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산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2018. 1.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에서 162,000,000원이 상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양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보상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한 재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고범진

판사황용남

별지